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9.12.09.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로 함. (제명)

나. “「영유아보육법」에”를 “「영유아보육법」등에”로 함. (안 제1조)

다. “마포구의회 의원”을 삭제함. (안 제5조제2항제5호)

라. “업무정지”를 “자격정지”로 함. (안 제6조제5호)

마.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함. (안 제6조제6호)

바. “그 사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함. (안 제9조제1항)

사.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

분한다." 로 함. (안 제10조제1항)

아. "정기회" 를 "정기회의" 로 하고, "임시회" 를 "임시회의" 로 함. (안 제10조제2항)

자. "사용료를 감면" 을 "사용료 등을 면제" 로 함. (안 제13조제5항)

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를 "수급자" 로 함. (안 제13조제5항제1호)

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를 삭제함. (안 제13조제5항제5호)

타. "규칙" 을 "시행규칙" 으로 함. (안 제20조제2항)

파. "대상자와 관내 구민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를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함. (안 제25조제3항)

하. "수급자와 저속득층 자녀의" 를 "저소득층 자녀 등의" 로 함. (안 제28조제1호)

갸. " 연간 행사계획 및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을 "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으로 하고, "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을 "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으로 함. (안 제31조제4호 및 제5호)

냐. "제32조(보육시설의 확대운영)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를 "제32조(연장보육) 보육시설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로 함. (안 제32조)

다. “제33조(보육시설 설치)”를 “제33조(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함. (안 제33조)

라. 제목 중 “보육시설”을 “방과 후 보육시설”로 하고, 본문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함. (안 제34조)

마.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함. (안 제41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에"를 "「영유아보육법」등에"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6조제5호 중 "업무정지"를 "자격정지"로 하고, 같은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항 중 "그 사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로, 같은조 제2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는 각각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안 제13조제5항 각호외의 본문 중 "사용료를 감면"을 "사용료 등을 면

제" 로 하고, 같은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를 "수급자" 로 하며, 같은항 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20조제2항 중 "규칙" 을 "시행규칙" 으로 한다.
안 제25조제3항 중 "대상자와 관내 구민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를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안 제28조제1호 중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를 "저소득층 자녀 등의" 로 한다.

안 제31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안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연장보육) 보육시설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안 제33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설치)" 를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 로 하고, 같은조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복지시설" 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로 한다.

안 제34조 제목 중 "보육시설" 을 "방과 후 보육시설" 로 하고, 같은조 본문 중 "규칙" 을 "시행규칙" 으로 한다.

안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영유아보육법」등에---------- ---------- ---------- ---------- --.
제5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 ~4. (생략) 5. 마포구의회 의원 ③~④ (생략)	**제5조(구성)**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1. ~4. (원안과 같음) 〈삭 제〉 ③~④ (원안과 같음)
제6조(기능) (생략) 1. ~4. (생략) 5.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사항 .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략)	**제6조(기능)** (원안과 같음) 1. ~4. (원안과 같음) 5. ---------- 자격정지---------- ----------. 6.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7. (원안과 같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③ (생략)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③ (원안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⑤ (생략)	**제10조(회의)** ①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 ---------- ----------. ③~⑤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④ (생략)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4. (생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생략)	**제13조(설치 및 운영)**①~④ (원안과 같음) ⑤---------- ----------**사용료 등을 면제**------- ---. 1.----------**수급자** 2.~4. (원안과 같음) **〈삭 제〉** ⑥ (원안과 같음)
제20조 ① (생략) ②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생략)	**제20조** ① (원안과 같음) ② ---------- ---------- **시행규칙**---------- ---------- ---------- ---------- ----------. ③ (원안과 같음)
제25조 ①~② (생략) ③ 수탁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와 관내 구민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④~⑩ (생략)	**제25조** ①~② (원안과 같음) ③ ----------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⑩ (원안과 같음)
제28조(위탁의 취소) (생략)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6. (생략)	**제28조(위탁의 취소)** (원안과 같음) 1.---------- ---------- --------- **저소득층 자녀 등의**------- ---------- 2.~6.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31조 (생략) 1.~3. (생략) 4. 연간 행사계획 및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 (원안과 같음) 1.~3. (원안과 같음)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32조(보육시설의 확대운영)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연장보육) 보육시설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33조(보육시설 설치) 구청장은 방과 후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보육시설,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제34조(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방과 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제34조(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 ----------시행규칙 ---------- ----------.
〈신 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원 안

[별 표]

서울특별시 마포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제13조 관련)

구 분	용 도	단 위	상 한 액 (단위:원)	비 고
회원가입시	도서 및 장난감대여 연회비	년	10,000	○ 가입일로부터 1년 ○ 개인, 시설 공통
사 용 료	영어교실 프로그램 이용	월	30,000	
	영플라자 학습체험실 이용		무 료	
상 담 비	검사 및 검사결과 상담	회	50,000	
	각종 치료 상담	회	30,000	

수 정 안

[별 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제13조제4항 관련)

1. 회원가입 및 사용료

구 분	용 도	단 위	상 한 액 (단위:원)	비 고
회원가입시	도서 및 장난감대여 연회비	년	10,000	○ 가입일로부터 1년 ○ 개인, 시설 공통
사 용 료	외국어교실 프로그램 이용	월	30,000	
	영유아플라자 학습체험실 이용		무 료	
상 담 료	각종 치료 상담	회	30,000	

2. 검사료

구분	검사명	이용료	비고
영유아용	사회정서발달선별검사 (ASQ-SE)	무료	선별/발달
	표준화된발달선별검사 (K-CDR-II)		선별/발달
	발달장애선별검사 (DEP)		선별/발달
	그림어휘력검사	10,000원	언어
	문장완성검사-아동용 (SCT)		성격/인성
	시지각능력측정검사 (BGT)	20,000원	성격/인성
	투사적성격검사 (K-CAT)		성격/인성
	언어발달선별검사 (PRES)	30,000원	언어
	성격유형검사 (MMTIC)		성격/인성
	아동지능검사 (K-ABC)	50,000원	지능
	아동지능검사 (K-WISC III)		지능
성인용	문장완성검사-성인용 (SCT)	10,000원	성격/인성
	성격유형검사 (MBTI GS)	30,000원	성격/인성

※ 비 고 :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자치구 보육정보센터, 구민 문화체육센터, 어린이영어도서관, 장난감 대여점 등)2개소 이상의 사용료 등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